

조경기준 일부개정안

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2012년 10월 1일”을 “2015년 10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<u>2012년 10월 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20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2015년 10월 1일</u> ----- -.